

# 기안용지

공공기관  
영수증

문서번호	181.7-814	관공구장	조항
처리기간		인사	조항
시행일자		9.18	
보존년한			
부조기관	제1부시장 기획재정 사무담당관	9/17	45
사인책임자	김광시	1976.9	45
경수번호	2000	발신장	9.20

서울특별시 지방세 업무위원회 운영 규정중 개정 규정  
제1항 내 부결재

1. 당시 지방세 업무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하여 재무국장이  
담당하게 함으로써, 위원장 유지 동위원회의 운영에 직장을 지양자'인

2. 서울특별시 지방세 업무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현안과 같이 개정  
발령취급자 한다

- 1. 위원장 1명
- 2. 기획재정 1명
- 3. 사무담당관 1명

4. 계조 123491-317 (제.9.10) 호 1부 출.

제3항  
수신 문화유산부장  
제 목 식보 개정  
서울특별시 지방세 업무위원회 운영 규정중 개정 규정을 사임

개제 법령을 것  
관 부 훈령 발령한 사본 1부 를.

제 3 단

수 신 재무국장 (참조 사무조사과장)

제 목 훈령 발령

이 시보에 개제 법령이었으나 시행에 착수있도록 할 것.  
관 부 훈령 발령한 사본 1부 를.

서울특별시 기상세식위원회 운영규정 개정

1976 9 18

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


1976년 9월 18일

서울특별시장 구 라



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는 영규정중 개정규정


제 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 2조 (구상) (1) 위원회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.
- (2)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된다.
- (3) 위원은 기획관리관, 감사관, 세징국장, 세무조사국장 및 구상사  중에서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사안에 따라 수시로 지명하는 1인이 된다.

제 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 3조 (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) (1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리한다.
- (2)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(3) 위원장,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정은 197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- (2) (경과조치) 이 규정  이전에 제출된 제조사 및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계에 의하여 처리한다.

개 정 이 유

당시 지방서심의위원회에 부위원장을 신설하여 재무국장이 담당

보록하여 위원장 보좌 및 사고시 직무 대행을 효과적으로 수행

하도록 서울특별시지방서심의위원회은 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함.



현

행

제 2조 (구상)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 시장이 되고, 위원은 기획관리관, 재무국장, 세정국장, 세무조사과장 및 구청 시민생활국장중에서 서울특별시 시장(이하 "시장"이라한다)이 지명하는 1인이 된다.



제 3조 (위원장의 직무) (1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통리한다.

(2)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 2조의 규정된 순위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개

정

제 2조 (구상) (1) 위원회는 위원장1인, 부 위원장1인과 위원5인으로 구성한다.  
(2) 위원장은 제1부 시장이 되고, 부 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된다.  
(3) 위원은 기획관리관, 감사관, 세정국장, 세무조사과장 및 구청 시민생활국장중에서 서울특별시 시장(이하 "시장"이라한다)이 사임에 따라 추시호지명하는 1인이 된다.

제 3조 (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) (1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리한다.

(2)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(3) 위원장,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서순 723-91-361

1976. 9. 10.

수신: [unclear]

발신: [unclear]

제목: 지방자치회의 의원직 운영 규정 개정 요구

1. 번호: 187.7-925 (16) 9. 21일 관건되다.

2. 서울특별시 지방자치회의 의원직 운영 규정을 남의과 같이 개정하여  
주시가 바랍니다.

첨부: 지방자치회의 의원직 운영 규정 개정 (안), 1쪽.

*[Handwritten signature]*

공  
관

지방행정사무관

*[Handwritten signature]*

서울특별시 행정조사과장



제2조 ( 구성 )

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부시장이다  
위원은 기획관리관, 재무국장, 세정  
국장, 시무국장(국장비수명) 시민생  
활국장중에서 시정운영국장(이하  
"시장"이라 함)의 부경관 7인  
으로 한다.

제7조 ( 운영 )

이규정  
관하여  
각종

부  
이규  
에

공감하여 주시  
신도리- (5) 787  
공감하여 주시  
신도리- (5) 787  
공감하여 주시  
신도리- (5) 787

제2조 ( 구성 )

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부시장이다  
부위원장은 재무국장 위원은 기획관리  
관 감사관 세정국장, 시무국장(국장비  
수명) 시민 생활국장중에서 시정운영  
국장 (이하 "시장"이라 함)의  
사안에 따라 수석부경관하는 7인  
으로 한다.

제7조 ( 운영 )

이규  
관하여  
각종

부  
이규  
에

공감하여 주시  
신도리- (5) 787  
공감하여 주시  
신도리- (5) 787  
공감하여 주시  
신도리- (5) 787

DOFICHSI





第 案 第

特別市

件：特別市母子保護施設  
目：運營規程(制定)

(制定理由)

1. 私設母子保護施設은 보다合理的인且 效果的인 運營管理하야 施設指導監督을 通하여 社會不條理 剝奪을 明瞭한 福祉施設의 風土를 造成코爲 當市 割令으로 制定함.

(主要骨子)

1. 目的 및 施設職員의 事務分掌
2. 收容者의 入退所 節次 및 自給
3. 出退所 等에 對하여 事務委任